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7년 8월

석사학위논문

#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방안에 관한 연구

- 중국의 기업정책 및 환경변화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고 태 곤

#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방안에 관한 연구

- 중국의 기업정책 및 환경변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dvance of Korean Enterprises to China  
-Centering on Chinese Business Policy and Changed Environment -

2007년 8월

조 선 대 학 교 경영대 학 원

경영학과

고 태 곤

#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방안에 관한 연구

- 중국의 기업정책 및 환경변화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계 원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年 4月 日

조 선 대 학 교 경 영 대 학 원

경영학과

고 태 곤

고태곤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2007年 5月 日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 〈 목 차 〉

## Abstract

제1장 연구의 목적과 의의 .....	1
제2장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
제3장 중국 경제의 현황과 전망 .....	3
제1절 중국경제의 최근 현황 .....	3
1. 경제성장과 구조변화 .....	3
2. 한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현황 .....	4
제2절 대 중국 투자의 특징 .....	9
1. 대 중국 투자의 특징 .....	9
2. 한국 기업이 갖는 비교우위 .....	10
제4장 중국의 기업정책 변화 .....	12
제1절 중국의 기업정책 변화 추이 .....	13
제2절 기업정책 변화의 내용과 영향 .....	14
1. 물권법 .....	15
2. 법인세법(기업소득세법) .....	16
3. 노동법 .....	18
4. 반독점법 .....	20
5. 파산법 .....	21

제5장 중국진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24
제1절 중국진출 기업의 문제점 .....	24
제2절 당면과제와 대응방안 .....	33
1. 합자기업 운영 .....	33
2. 노무 관리의 효율화 .....	37
3. 중국 내수 시장 진출 .....	42
4. 리스크 관리 강화 .....	46
제6장 결    론 .....	54
〈참고문헌〉 .....	56

## 〈표 목 차〉

<표 1> 한국의 대 중국 투자현황 .....	4
<표 2> 해외투자 중 중국 투자 .....	5
<표 3> 한국기업들의 지역별 투자건수 .....	7
<표 4> 기업규모별 대 중국 투자현황 .....	8
<표 5> 최근 발표된 기업정책 관련 주요 법안 .....	15
<표 6>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과 기존 소득세법 비교 .....	17
<표 7> 노동계약법의 주요 내용 .....	19
<표 8>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 .....	20
<표 9> 新·舊 파산법의 비교 .....	22
<표 10> 기업정책 관련 법안의 영향 평가 .....	23
<표 11> 기업정책 관련 법안에 대한 대응전략 .....	24
<표 12> 현지법인의 애로요인 .....	26
<표 13> 중국의 외국인투자 추이 .....	47
<표 14> 중국 사업의 리스크과 그 영향 .....	48

## 〈그림 목차〉

<그림 1> 중국의 기업경영 환경 추이 .....	14
<그림 2> 리스크 평가 .....	48



# ABSTRACT

## **A Study on the Advance of Korean Enterprises to China**

-Centering on Chinese Business Policy and Changed Environment-

**Ko, Tae-Gon**

**Advisor : prof. Lee. Kay-Won**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Chinese economy based on bibliography to identify what measures we have to develop to keep up with changed business policies such as the Law of Reality and Corporation Tax Law that passed through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s measures to deal with the changed business environment,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we have to keep in mind that we should develop competitive power rather than depend on privileges in advancing to China.

Second, enterprises should analyse threats and opportunities according to changed environment properly to re-adjust business strategies against China.

Third, we should completely analyse the effects and ripple effect of effective each law to prepare countermeasures, prepared against the measures in progress of setting up laws in advance, and actively present the opinions of enterprises to Chinese government.

Fourth, we have to develop measures to reinforce risk management involved in changed Chinese economy environment.

## 제 1 장 연구의 목적과 의의

1980년대 후반 국내 생산비(특히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저임금추구형에서 시작된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는 그 동안 중국정부의 경제개방 및 개혁 정책과 외국인투자 촉진정책으로 급속히 증가해 왔다. 지역별로는 중국 대외개방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화남지역(복건성)에 대한 투자가 호시를 이루었다. 그 이후 1992년에 체결된 양국간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한국의 對중국 투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지역도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발해만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대 중국 투자의 지리적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상해를 중심으로 하는 화동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도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갈등 증폭, 주5일 근무제 조기 도입으로 인한 생산일수 감소,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임금비용 상승, 기타 제반 비용조건의 악화, 내수 침체 및 이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등은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으며, 더욱이 기업에 대한 정부의 불투명한 태도는 기업의욕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하여 중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제1교역 국가이면서 동시에 제1 직접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임금 등 유리한 비용조건, 발 빠른 개방정책과 경제특구 건설 및 중국의 거대한 시장잠재력은 마치 블랙홀처럼 세계의 기업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명 「중국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의 간섭 및 통제(준조세 등)가 심하여 경제 자유도가 낮은 편이고, 토지 확보, 합자기업 운영, 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단순 노동력은 많지만 숙련된 노동자 및 양질의 기술자가 부족하고, 그 외에도 사회 및 경제제도의 차이, 역사 및 문화적 차이, 위안화의 가치변동, 기타 예상치 못한 위험 요인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그 영향에 대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중국의 기업정책변화와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중국에 이미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황과 당면과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기존 진출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진출 후발업체에 튼튼한 밑바탕을 제공함으로써 해외 진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 제 2 장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고의 내용은 문헌연구로서 중국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최근 전인대를 통과한 물권법과 법인세법 등 기업정책의 변화에 발맞추어 어떤 대 중국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3장에서는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최근 제정된 물권법과 법인세법, 파산법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이들 법안의 발효로 인하여 우리 기업이 겪게 될 기회와 위협에 대해 살펴본다.

제5장은 중국진출기업의 당면과제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결과는 기존 중국 진출기업과 향후 중국에 진출 예정인 기업 모두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존기업은 경영 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진출 예정인 기업은 투자계획에 대한 하나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제 3 장 중국 경제의 현황과 전망

## 제1절 중국경제의 최근 현황

### 1. 경제성장과 구조변화

중국은 1978년에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2002년까지 24년 간 연평균 9.3%의 놀랄만한 성장률을 기록하여 세계경제(연평균 2.8%)보다 3배 이상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13억 인구를 지닌 거대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모두 경제발전에 집중시킨 중국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에 힘입은 것으로서 세계경제발전에 있어서 전대미문의 엄청난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02년 세계 외국인투자시장에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1위 유치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실물경제분야 뿐 아니라 금융부문에 걸쳐 세계경제의 주요 결정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경제의 위상이 빠르게 높아짐에 따라 주변국가의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산업공동화를 유발한다는 「중국 위협론」이 대두되고 있을 정도이다.<sup>2)</sup> 그러나 중국의 위상변화는 인근 아시아국가의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아시아 경제회복에 기여하고 앞으로는 세계경제(미국과 유럽,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중국 등 세계 3대 성장 축)의 견인역할을 담당할 것 분명하다.

아울러 중국이 지금과 같은 빠른 성장(연간 약 10%)을 계속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경제의 성장지속 가능

---

1) 중국은 1949년 건국 이후 개혁·개방 이전까지도 6% 정도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이 기간 중의 통계는 정확도가 낮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2) 중국 위협론은 로스먼로(R.Munro) "깨어나고 있는 용- 아시아의 진정한 위협은 중국으로부터 온다" "Policy Review, 1992.가을)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중국이 미국의 군사 및 경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변할 수 있다는 논지의 주장이다.

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社は 중국은 현재의 성장속도가 지속될 경우 2025년 이전에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 2. 한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현황

한국의 중국투자는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198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중국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표 1〉 한국의 대 중국 투자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건)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투자금액	0.0	6.4	16.2	42.5	141.1	263.7	633.1	841.1	930.2	741.8
투자건수	1	7	24	69	170	381	841	751	740	631
건당 금액	0.5	0.9	0.7	0.6	0.8	0.7	0.8	1.1	1.3	1.2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투자금액	696.1	365.9	712.1	638.9	1,032.1	1,670.6	2,300.7	2,648.7	3,319.6	17,000.8
투자건수	266	459	772	1,049	1,389	1,679	2,143	2,243	2,303	15,918
건당 금액	2.6	0.8	0.9	0.6	0.7	1.0	1.1	1.6	1.4	1.07

자료 : 수출입 은행

〈표 1〉에서 보듯이 한국의 대 중국 투자는 1991년까지는 101건 6,500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한중 수교 이후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6년 말까지 15,918건에 170억 달러 수준으로 투자액이 늘어났다.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시기였던 1997년과 1998년, 1999년의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은 1996년 보다 하락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투자건수에서는 1996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투자금액은 7억 12만 달러로 1996년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IT 경기 호황과 벤처열기, 대기업의 구조조정 완료로 인해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2000년이 넘어서면서, 대 중국 투자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최고의

투자금액 및 투자건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대 중국 투자 패턴을 볼 때, 1998년부터 1996년까지를 1차 중국 진출 붐의 시기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를 2차 중국 진출 붐의 시기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 중국 투자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은 2000년을 넘어서면서 대기업 투자가 본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당 투자금액은 전체 평균 90만 달러로 소규모 투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 점이다. 이는 연도별 건당 투자금액 평균을 보면 더욱 두드러지는데, 1998년만을 제외하고 계속 연도별 건당 투자금액은 100만 달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 중국 투자에서 소규모 투자 현상이 절대적인 것은 중소기업이 진출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표 2〉 해외투자 중 중국 투자

(단위 : 백만 달러, 건 %)

	전 세계 해외투자		중국투자		중국투자비율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88	171	216.0	1	0.0	0.58	0.05
1989	269	570.8	7	6.4	2.59	1.11
1990	341	963.1	24	16.2	7.06	1.69
1991	444	1,109.7	69	42.5	15.51	3.80
1992	497	1,216.2	170	141.1	34.12	11.57
1993	689	1,264.2	381	263.7	55.38	20.87
1994	1,489	2,303.8	841	633.1	56.52	27.48
1995	1,332	3,101.5	751	841.1	56.42	27.12
1996	1,471	4,458.3	740	930.2	50.03	20.86
1997	1,331	3,709.9	631	741.8	47.40	19.99
1998	617	4,812.5	266	696.1	43.11	14.46
1999	1,095	3,329.5	459	365.9	41.92	10.99
2000	2,088	5,071.5	775	712.1	37.12	34.10
2001	2,153	5,164.4	1,049	638.9	48.72	12.37
2002	2,494	3,701.6	1,389	1,032.1	55.69	27.88
2003	2,811	4,066.7	1,675	1,670.6	59.59	41.08
2004	3,763	5,990.8	2,143	2,300.7	56.95	38.40
2005	4,396	6,559.8	2,243	2,648.7	51.02	40.38
2006	5,190	10,759.4	2,303	3,319.6	44.37	30.85
Total	32,641	68,369.7	15,917	17,000.8	-	-

자료 : 수출입 은행

특히, 대 중국 투자는 2001년 이후에 더욱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 이는 IMF 이전에 중국에 초기 진출하였던 기업들 중 성공적 기업들의 재투자와 중국에 대한 투자학습을 마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출을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도별 투자에서 특이사항은 IMF 시기였던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전반적인 해외투자 금액이나 건수가 하락하였지만, 그 중에서 중국 투자비중이 더욱 많이 하락한 것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수익성 창출의 차원보다는 생산기지형으로 인식하였던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대 중국 투자에서 새로운 현상은 중국 투자에 대한 철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 중국 투자 현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중국 투자 지역별 현황을 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 중국 투자는 1988년 산둥성 푸젠성을 시작으로 하여, 2006년 현재에는 중국 전역의 대부분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한국과 항구가 가까운 산둥성과 푸젠성, 그리고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북 3성과 인근지역인 베이징과 톈진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초기부터 꾸준히 투자지역은 다변화되고 있다. 투자의 진화를 보면, 초기에는 산둥성을 시작으로 하여 북진하여 동북 3성과 산둥성, 푸젠성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1992년부터는 상해가 투자가 시작되면서 점차 투자의 남진현상이 나타났다가, 1998년 이후에는 점차 서부내륙지역으로 투자가 진행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의 다변화로 인해 베이징과 지린성에 대한 투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상당한 투자가 산둥성과 랴오닝성, 장쑤성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아직 소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중국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상하이 인근지역인 장쑤성과 저장성에 대한 투자가 현재 증가하고 있는 것을 통합하여 장강지역 투자로 본다면, 점차 중국의 본격적인 소비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한국의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 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발맞추어 점차 중국 내륙지역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 원인에는 중국 연안 지역에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되면서, 노동자

들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함과 동시에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내륙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표 3〉 한국기업들의 지역별 투자건수

(단위 : 투자건수,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산동성	311	269,702	424	191,471	549	245,851	641	461,810	822	595,347	862	659,580	796	817,150
요녕성	111	60,864	138	39,676	148	62,945	196	102,854	224	202,372	270	183,615	259	177,859
길림성	74	10,926	55	21,639	42	16,157	40	13,808	56	19,224	64	37,472	83	21,101
천진시	69	63,680	84	109,881	136	102,780	141	110,050	166	138,081	212	214,764	178	283,824
북경시	48	85,511	64	24,439	90	172,082	123	178,745	199	339,883	205	420,898	232	269,066
강소성	42	82,192	67	102,776	129	203,634	172	401,540	234	570,293	198	611,451	238	1,071,333
상해시	29	23,996	73	31,727	103	61,397	112	91,579	137	104,801	161	126,438	179	214,379
절강성	22	24,548	34	42,302	57	61,068	76	121,382	88	96,595	74	121,844	93	80,969
광둥성	19	10,379	33	22,673	45	34,431	64	59,266	87	118,106	63	72,613	75	125,099
흑룡강성	18	10,524	22	1,974	20	4,981	19	10,046	22	8,442	23	12,350	15	14,257
하북성	13	1,730	21	5,938	33	13,118	32	21,989	41	23,695	35	59,367	52	57,847
복건성	6	1,172	7	2,883	9	22,912	14	9,586	8	4,852	16	6,197	5	12,503
강서성	3	330	1	125	3	386	4	475	2	13,360	2	339	8	12,646
감숙성	3	369	1	113	-	24	1	157	1	65	-	-	7	9,290
사천성	2	5,537	3	366	7	2,772	11	18,268	7	14,063	14	9,302	12	10,557
하남성	2	278	5	1,045	-	471	7	536	5	4,464	4	18,147	6	7,622
호남성	1	18,186	3	28,442	2	370	9	36,049	4	23,418	2	46,814	6	81,802
청해성	1	121	-	-	-	-	-	-	-	-	-	-	2	1,298
산서성	1	100	2	422	2	1,465	6	1,330	1	1,794	-	144	3	2,018
안휘성	-	5,505	1	6,418	4	8,011	4	11,301	14	4,192	7	12,432	7	6,554
귀주성	-	-	1	618	1	3,246	-	306	2	1,270	-	-	3	755
호북성	-	-	1	20	4	9,097	3	1,788	6	11,222	4	3,155	13	10,246
자치구	-	34,000	3	3,548	1	300	2	15,264	5	778	11	15,428	18	23,962
해남성	-	-	-	-	3	3,797	-	2,276	3	2,531	8	13,411	3	5,383
섬서성	-	2,418	2	175	1	363	-	-	3	890	2	2,286	4	427
운남성	-	-	4	263	-	454	2	166	6	937	6	631	6	1,804
합계	775	712,068	1,049	638,934	1,389	1,032,112	1,679	1,670,571	2,143	2,300,675	2,243	2,648,678	2,303	3,319,751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표 4〉에서는 기업 규모별 중국투자 현황을 나타내었다. 기업규모 별로 볼 때, 투자금액면에서는 2000년까지는 대기업의 투자금액이 월등히 높았으나, 2001년 이후부터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건수에서는 1988년부터 2006년까지 일관되게 중소기업의 대 중국 투자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건수별 투자금액을 보면, 대기업은 평균 11만 달러를 투자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7만 7천 달러를 투자하여 건당 투자금액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보다 많은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 기업규모별 대 중국 투자현황

(단위 : 건, 백만달러)

연도	대기업			중소기업		
	투자건수	투자금액	건당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건당 투자금액
1988	0	0.00	0.00	1	0.01	0.01
1989	2	4.00	2.00	5	2.36	0.47
1990	8	7.65	0.96	16	8.52	0.53
1991	8	12.97	1.62	60	29.10	0.49
1992	14	54.72	3.91	154	86.22	0.56
1993	35	67.90	1.94	337	193.97	0.58
1994	86	334.78	3.89	709	292.32	0.41
1995	85	462.37	5.44	606	365.22	0.60
1996	71	558.45	7.87	494	344.86	0.69
1997	45	529.64	11.77	448	199.00	0.44
1998	18	594.44	33.02	179	93.13	0.52
1999	11	252.59	22.96	283	97.18	0.34
2000	16	486.56	30.41	559	201.63	0.36
2001	23	293.89	12.78	746	305.16	0.41
2002	46	485.54	10.56	937	487.50	0.52
2003	53	681.30	12.85	1,135	903.45	0.79
2004	67	933.35	13.94	1,096	1,184.84	1.08
2005	74	1,118.70	15.12	939	1,288.53	1.37
2006	60	1,646.77	27.45	951	1,373.84	1.44
Total	722	8,525.62	218.49	9,655	7,456.84	0.77

## 제2절 대 중국 투자의 특징

### 1. 대 중국 투자의 특징

#### (1) 늦은 출발, 빠른 발전 속도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시점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적어도 10년은 늦은 편이나, 그 발전 템포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 한국 기업들은 1980년대 말부터 소규모의 실험적 투자에 착수했으며, 1992년 8월 양국 수교 후에는 본격적인 대규모 직접투자가 시작되었다.

한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는 1992년 1억 4천만 달러에서 2002년 약 9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누적 규모가 7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는 1992년에 세계 제9위(홍콩·마카오·대만 제외)였으나, 2006년 현재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제4위를 차지하고 있다.

#### (2) 환발해 지역에 집중

여타 국가에 비하여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프로젝트는 환발해 지역과 동북 지역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 현재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는 대체로 5대 권역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중국투자의 97%이상으로 여타 지역에는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투자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화북지역(北京·天津·河北)과 동북 3성(林·黑龍江) 및 산둥성 등으로 이들 지역에 한국 총 투자기업의 약 86%가 진출해 있다. 화남 지역(東·海南·福建)은 중국 전체로는 외자기업 유치 가장 많은 지역이나, 한국기업은 불과 총투자기업의 3%만 진출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화동지역(상해)에도 한국 기업의 투자 실적은 전체의 11%로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 2. 한국 기업이 갖는 비교우위

### (1) 지리적 우위

대 중국 주요 투자국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며, 이 중 한국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 진출에 매우 편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의 환발해 지역에 인접해 있다. 환발해 지역은 북경, 천진, 하북, 산둥, 요녕 등 5개 성·시를 포괄하고 있다. 개방 이래 1980년대는 珠江 삼각주 지역, 1990년대 초는 長江 삼각주 지역, 지금은 환발해 지역이 부상하고 있다. 이 지역은 중국의 동북과 화북을 잇는 결합지역이며, 중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협력과 경쟁에 참여하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요약컨대 한국은 동북아 경제권에 속하면서 이제 막 대두하고 있는 중국 환발해 경제권과 인접해 있다는 사실이다. 즉, 한국은 이러한 특수한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중국의 경제발전에 참여함과 동시에 동북아경제권 형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에 있어서 대 중국 투자는 국제화 경영으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방식일 될 것이다.

### (2) 인문적 우위

한국은 중국과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유교윤리는 양국의 문화발전 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구미 각국이 중국에 진출할 경우 문화 배경, 사유(思惟)와 행위양식, 가치기준의 차이 등이 상호 이해 증진에 커다란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한국 기업은 이러한 측면에서의 애 로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 (3) 경제의 상호보완성

자연조건과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로 인하여 한중 양국 경제는 상호보완성이 매우 강하다.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협력, 특히 중국투자를 통하여 소요되는 노

동력, 에너지, 원자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인 시장자원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국제화 목표를 실현하고 기업 경쟁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

한국 기업은 조선·자동차·가전·반도체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자금 및 국제 판매망과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중국 발전에 필요한 것이다.

특히 한국은 중국보다 15~20년 앞서 개방형 경제개혁을 진행하였으며 개도국의 발전에 있어 성공한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한국의 경험은 여타 국가들의 경험에 비해 중국의 실정에 보다 잘 적용될 수 있으며, 한국 기업의 경험과 교훈은 중국기업에 큰 귀감이 될 수 있다.

중국 기업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자금·관리기술·국제화의 경험을 도입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출과 주요 교역 상대국수립과의 수출입 결합도 산출해 보면 한중간에는 미국, 일본 등 여타 국가와의 관계에 비해 동 결합도가 매우 커 보완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제 4 장 중국의 기업정책 변화

중국의 제10기 5차 전국인민대표대회<sup>3)</sup>(이하 전인대로 약칭)가 2007년 3월 5~16일 개최되었는데, 이번 전인대에서 그 동안 주목받아온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 등이 통과되었다.

이번 전인대에 나타난 경제정책의 방향은 온건한 긴축기조 유지, 구조조정 지속, 외자이용의 질 제고, 금융체제 개혁 등으로 요약되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의 첫째인 2006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중국의 기업정책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바, 이는 2002년에 출범한 후진타오(胡錦濤) 지도부가 '시장경제'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2007년 가을에 시작되는 후진타오 2기 지도부가 2010년까지 각종 개혁법안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업정책의 변화는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최근 제정된 물권법, 법인세법, 파산법과 더불어 향후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계약법, 반독점법 등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유시장경제제도의 도입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경직화와 외자에 대한 규제강화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먼저 '물권법'은 그동안 국유재산 우선 원칙 등으로 침해받아온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의 재산권과 동등하게 법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되어 온 자본주의 對 사회주의 간 노선갈등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고,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불안 심리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법'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중국기업으로 이원화된 법인세율의 단일화(25%)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면·감세조치의 축소 그리고 각종 우대조치를 '지역' 기준에서 '업종' 기준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겠지만, 개정법인세율이 여전히 국제수준대비 낮고, 既진출기업에 대해서는 5년 간

---

3)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 우리나라의 입법부에 해당하지만, 권한과 활동영역이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매년 3월 초중순에 개최되고 가을에 열리는 공산당대회와 더불어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일정 중 하나임.

유예조치가 병행되기 때문에 그 충격은 상당 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논의 될 노동계약의 서면체결 의무화와 퇴직금 지급 등을 핵심내용을 하는 '노동계약법'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의 유연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반독점법'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 될 것이다. 금융·보험·통신 등 서비스시장의 경우, 국영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이 상당히 축소되어 외국인투자기업의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적대적 M&A 제한 등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파산법'의 경우 적용대상의 확대(국영기업→모든 법인기업)와 파산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으로 사업 리스크가 감소함은 물론 중국 내 부실채권시장도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러한 중국의 기업정책이 '외자유치형'에서 '공정경쟁형'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동시에 외국기업에게는 노동환경의 악화와 독과점 규제 강화 등 기업환경의 악화를 동반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중국 진출시 특혜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위협과 기회요인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냉정히 분석하여 중국사업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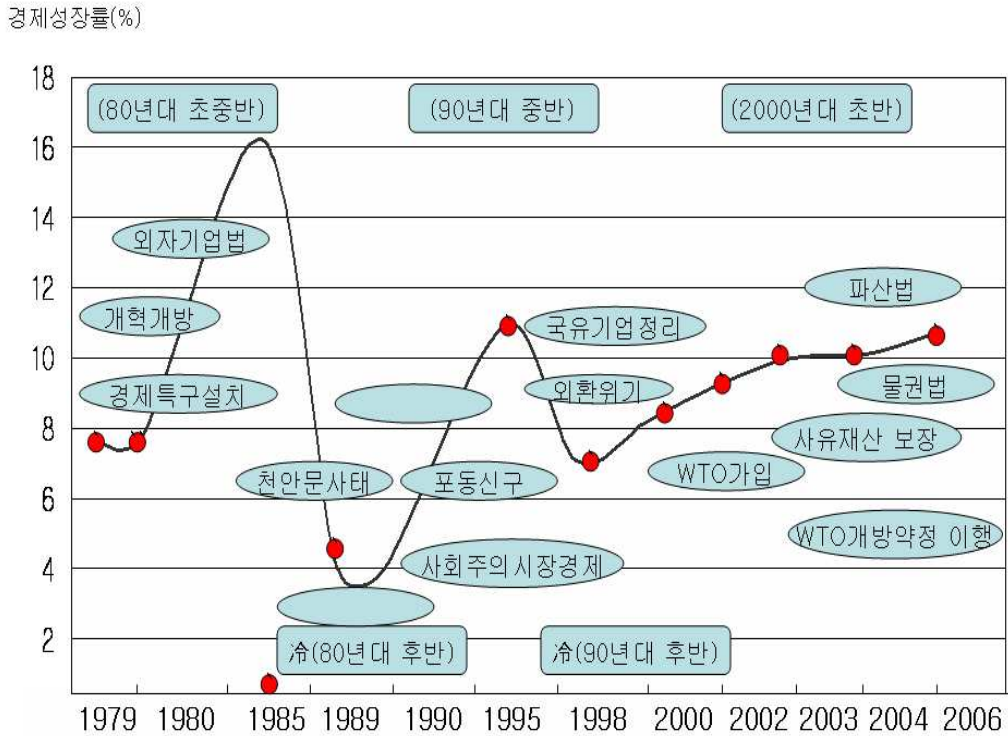
## 제1절 중국의 기업정책 변화 추이

중국의 개혁개방 이래 기업환경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노선에 따라 온(溫: 기업환경 호전)과 냉(冷: 기업환경 악화)을 반복하고 있다. 1980년대 초, 중반에는 개혁개방정책의 실시로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가 1980년대 후반에는 천안문사태와 긴축조치 등으로 기업환경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 후 1990년대 초, 중반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도입(1993년)으로 기업환경이 개선되었다가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 여파로 기업환경이 악화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사유재산 보장, 각종 규제가 완화되었음은 물론 2002년 WTO가입과 후진타오 지도부의 등장으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 및 경제규범의 글로벌스탠더드화가 더욱 촉진되는 분위기이다. 후진타오 지도부는 '경제강국'으로 이행하기 위해 경제체질의 개선을 통한 '질적 성장'을 강조하여 법인세법 등 기업정책 관련 법안

을 제. 개정하였다. 2007년 가을 출범하는 후진 타오 2기 지도부(2007~2012)는 2010년까지 각종 개혁법(민법, 사회보장법, 환경관련 법 등)안의 완성을 통해 시장 경제로의 이행과 글로벌스탠더드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중국의 기업경영 환경 추이

중국의 기업경영 환경 추이



## 제2절 기업정책 변화의 내용과 영향

중국은 최근 물권법을 비롯 법인세법과 파산법을 입안하였고, 노동계약법과 반독점법을 심의 중에 있다. 이에 각 법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최근 발표된 기업정책 관련 주요 법안

법안	개요
물권법 (2007.10.1 시행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재산과 동등하게 보장</li> <li>• 사유재산 보장에 대한 법률의 완비</li> </ul>
법인세법 (2008.1.1 시행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법인세율을 통합</li> <li>• 글로벌스탠더드에 적합한 ‘공정경쟁형’ 세제 도입</li> </ul>
노동계약법 (심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금 지급, 종신고용 등 노동자 권익을 강화</li> </ul>
반독점법 (심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영기업, 다국적기업 등의 독점 행위 제한</li> <li>• 시장경제, 글로벌스탠더드에 적합한 공정경쟁을 보장</li> </ul>
파산법 (2007.6.1 시행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영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파산 보장</li> <li>• 기업의 퇴출과 진입을 시장에 일임</li> </ul>

## 1. 물권법

물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즉, 국가, 집단, 개인의 재산권과 기타 권리자의 재산권은 법의 보호를 받고, 이를 침해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 및 집단의 재산권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관행이나 관례로서 존재하던 용익물권, 담보물권, 물권 청구권 등 재산권의 종류와 내용 등을 법률화한 것이다.

나아가 부동산 사용권의 기간 만료 후 추가 연장을 규정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보장한 셈이다. 과거 중국의 부동산 사용기간은 주택용지 70년, 비주택 중공업, 교육, 과학, 체육 등의 용지를 50년, 상업, 관광, 오락 용지는 40년으로 되어 있었다.

이 중 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은 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규정하였다.

그 동안 물권법이 제정되기 전(개혁개방 이전)의 헌법은 “국유재산은 신성불가



침한 것이며 사회주의 공유제 시행을 위해 사유제도를 일소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국유재산 우선 원칙 등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2004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 개인기업 경제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등과 같은 사유재산권 보호가 명문화되었으나 원론적 수준에 그침으로써 구체적 조치는 미비하여 현실적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은 국민들이 저항하는 사례가 다발 하였던 것이다.

한편, 물권법 제정으로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는 중요한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즉, 소유권, 담보권 등이 비교적 명확해지면서 물권법 미비로 인한 각종 분쟁과 혼란 그리고 경영에 있어서 비효율성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지만,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 명시 등으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투자가 어려워지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되는 효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소유권에 대한 안정적인 법률시스템 구축으로 기업의 투자불안이 해소됨은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 담보수단 다양화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 제고와 부실채권 감소 등 경영리스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 2. 법인세법(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은 세율단일화와 업종별 우대가 핵심사항으로, 그 동안 외국인투자기업과 중국 기업으로 이원화된 법인세율을 25%로 단일화하였다. 다만, 신법인세 법안 공포 이전에 설립된 기업에게는 5년 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고, 서부내륙지역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의 법인세율은 15%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하였다.

〈표 6〉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과 기존 소득세법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외자기업 모두 33%</li> <li>※ 실제로는 외자기업 25%, 내자기업 33%로 양분</li> <li>- 일부 특수지역(경제특구, 개발구) 외자기업 24%, 15% 우대 세율</li> <li>- 내자기업 중 박리(微利)기업에 27%, 18%의 차등세율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외자 기업 모두 25%</li> <li>- 우대 세율 적용(5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리 소형기업 20%, 중점 고신기술 기업 15%, 창업 투자기업 우대 확대, 환경보호·물 및 에너지절약·안전생산분야 기업 우대 확대</li> <li>○ 農·林·牧·漁業·인프라기업 기존 우대 지속</li> <li>○ 노동서비스·복지기업·종합적 자원이용 기업에 대한 직접 감면세정책은 代替 우대</li> <li>○ 특구·포동신구에 설립된 중점 고신기술기업은 과도 기적 우대 실시, 서부대개발지역 장려기업 우대 지속</li> <li>○ 생산성 외자기업 '2면3감(2免3減)', 이익 실현후 2년간 세금면제, 3년간 50% 면제)우대 폐지, 수출형 외자기업에 대한 징세 경감조치 폐지</li> </ul> </li> </ul>
과도기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에 15%와 24%의 세율 우대 기업은 신법 실시후 5년간 기존 우대 지속</li> <li>- 기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기감면세 혜택을 받는 기업은 신 세법 실시 후에도 기존 세법의 우대 규정과 기한 적용</li> </ul>	

자료 : 金人慶(財政部長), “關於〈中華人民共和國企業所得稅法(草案)〉的說明 -2007年3月8日在第十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五次會議上”, 新華網(2007. 3. 16),

그 동안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던 '2년 면세, 3년 감세(2免 3減)' 조치를 축소하고, 각종 우대조치도 '지역' 기준에서 '업종' 기준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즉, 종전에는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70%이상 또는 10년 이상 생산활동을 영위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이익 발생 연도부터 계산하여 2년 면세, 3년 감세 혜택을 부여하던 것을 축소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에 관계없이 첨단업종에는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환경보호기업, 기술양도기업, SOC투자기업 등도 법인세를 감면 받게 되었다. 단, 서부 내륙지역과 소수민족 자치구로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우대 조치를 존속시켰다.

이 밖에 移轉가격과 조세도피처를 통한 탈세, 회계조작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납세조정' 항목을 추가하였다. 특히 기존에 이전가격 조사는 본국 모기업과의 거래에 대해 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수출입거래 비중

이 높은 해외거래처까지 확대되었다.

중국 상무부는 2006년 전체 외국인 투자액 중 25%가 3대 조세 도피처(버진아일랜드, 카이만군도, 사모아섬)를 거친 중국인의 탈세형 투자로 추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정부는 “외국기업들이 이전가격 조작 등을 통해 고의로 적자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자 외국인투자기업 중 약 2/3가 비정상적 적자이고, 이전가격을 통해 매년 300억 위안에 달하는 세수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중국 기업의 세금부담은 33%에서 25%로 8%가 인하됨으로써 법인세 부담이 대폭 축소되었다. 즉, 법안이 실시되는 2008년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410억 위안 증가하는 반면 중국 기업은 1,340억 위안이 축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자국 기업의 조세도피처를 통한 재진출 금지와 세무조사 강화 등이 병행되면서 중국 기업의 세부담 축소 효과는 상당부분 상쇄되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3. 노동법

노동계약법은 개별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 노사간 균형 유지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즉, 퇴직금 지급, 종신계약(無고정계약) 등 근로자의 권익이 크게 강화되고, 자발적 사직이 아닌 경우 근속 1년당 평균임금 1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될 것이다.

·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재계약시, 또는 계약을 2번 이상 체결할 경우 종신계약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나아가 종전과 동일하게 단체행동권은 부여하지 않았지만, 해고 시 사전통보, 단체계약권 부여 등으로 노동조합의 권한이 이전에 비해 훨씬 강화되었다.

〈표 7〉 노동계약법의 주요 내용

구분	현 황	노동계약법
노동계약	• 서면 노동계약이 명시되지 않음	• 노동계약의 서면체결 의무화 • 한달 내 미체결 시 2개월분 임금 지급
수습기간	•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수습기간 중 일방적 해고 가능	• 수습기간 중 80%이상 지급 • 해고 시 객관적 입증자료 구비
퇴직금	• 계약기간 내 사용자 측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만 지급	• 계약 만료 시 1년 근속 1개월분의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
종신계약 (無고정계약)	• 근속 10년 이상 직원이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계약연장에 동의할 경우	• 근속 10년 이상 직원 재계약시 • 2회 연속 고정기간 계약을 체결한 후 재차 계약 시(근속연수와 무관)

자료 : “중국의 노무관리 제도 이해” 주중한국대사관, 2005.3 참조

이러한 노동계약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재 중국 미국 상회, EU 상회, 한국 상회 등은 중국의 투자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중국 내부에서도 “기업의 고용유연성 제한 등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되어 결국 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국내외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약법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대의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르면 2007년 하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노동계약법이 시행될 경우 퇴직금 지급, 종신계약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고용 경직성 등으로 기업 측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근로자의 권리 의식 향상은 물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권 보장, 해고시 노동조합과의 합의조항 신설 등 노조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어 노사간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노동계약법에는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때 노조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20명 이상 감원 시에는 30일 전에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노조가 단체협약 권한을 가지고, 단체협약 관련 분쟁 시 사측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도 명시하고 있다.

결국 노동계약법은 외국인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상징성이 크고 범집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노동계약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4. 반독점법

2007년내 통과가 유력한 반독점법은 국영기업과 다국적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2개사 67%, 3개사 75%인 경우를 시장 지배적 지위로 규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카르텔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표 8〉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

대상	주요 내용
행정부	• 정부 및 관련부처의 시장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
국영기업	• 정부 지원과 시장지배력 남용을 통한 독과점 행위 금지
외국기업	• M&A시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가능
지방정부	• 외지기업의 시장진입 제한 등 '지방이기주의'조치를 금지

인수합병 관련기업 중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매출액이 15억 위안)을 초과하거나 시장점유율이 20%를 상회하면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인수합병으로 인해 시장경쟁의 제한과 공공이익의 침해 등이 예상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인수합병의 비준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독점법은 이미 2006년에 초안에 대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으나, '행정 독점'의 타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행정 독점의 배후에 있는 이권 등을 누리는 관련부처가 공공연히 입법화를

반대함은 물론, 진입장벽이 무너질 경우 지방 중소기업체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반독점법의 집행권한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도 입법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반독점법은 시장경제 개혁과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이미 2007년 전인대에서 1차 심의를 거쳤고, 2~3차례의 추가 심의를 거쳐서 연내에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독점법의 특징은 ‘행정 독점(정부에 의한 독점)’ 및 지방보호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노력이며, 국영기업에 대한 특혜조치가 일정부분 해소되어 중장기적으로 WTO회원국에 적합한 시장경쟁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여 바람직한 평가를 받고 있다.

반독점법은 특히 금융, 보험, 통신 등에 대한 행정 독점 문제가 해결될 경우, 외국기업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의 시장 독과점 제한, 카르텔 금지, 적대적 M&A 제한 등은 외국 기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즉, 소프트웨어와 전자, 화학산업 등 거대 다국적기업에 대한 제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반독점법이 시행될 경우 카르텔 금지, 적대적 M&A 등의 제한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커서 중국 정부와 외국 기업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5. 파산법

중국 정부는 1994년부터 국유기업 파산 시에 시장논리에 어긋나게 정부자금을 지원하는 파산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사업자 및 개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기업으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가 선임한 청산인이 파산절차를 담당하도록 하여 전문인력을 활용한 관리인 제도와 회사정리제도의 도입으로 파산기업에게는 회생기회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또한, 채권자의 권리보호 및 파산기업의 경영자 문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9〉 新·舊 파산법의 비교

구분	舊 파산법	新 파산법
적용범위	• 국유기업	• 개인사업자 및 개인을 제외한 모든 기업
채권자 권리보호	• 근로자 권리 우선	• 채권자 권리 우선
파산기업의 경영자 처벌	• 불명확	• 민사책임을 지고, 3년간 타 기업의 경영참여 불가
관리인 제도	• 無	• 有
기업회생 제도	• 無	• 有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초안)” 및 관련 언론보도 참조

이러한 파산법 개정에 따라 기업퇴출이 원활해지면서 중국 시장경제체제는 한층 진전될 전망이다. 즉, 파산시 과거와 같은 정부지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중요해지고, 이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일조함은 물론, 국제기준에 준하는 예측 가능한 법률체제와 시장 환경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의 경영리스크가 감소되는 긍정적 효과도 예상된다.

나아가 채권자 권익 향상, 물권법 통과 등에 따른 리스크 감소로 기업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 등 현지 금융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에는 파산법 미비와 중국 당국의 비협조로 공식적인 파산이 어려워 투자자산의 포기 등 부작용이 속출하였으나, 파산절차가 투명해짐에 따라 파산을 통한 청산이나 회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80~1990년대 중국의 기업정책은 해외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부족한 투자재원과 취약한 국내 산업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WTO가입과 함께 세계 4대 경제대국,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외자 유치형’ 기업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각종 기업정책이 시장의 자율과 원칙을 중시하는 ‘공정 경쟁형’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 법인세법은 상대적으로 중국기업에게 유리하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명시된 내용에 비해 상당부분 제한적일 것으로 판

단된다.

노동계약법은 단기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나, 중장기적으로 노동 시장 경직화와 경쟁력 저하 등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이 외국인 투자기업과 자국기업 그리고 중국경제성장과 중국경제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래 <표 10>와 같다.

<표 10> 기업정책 관련 법안의 영향 평가

법안	외국인투자기업	중국기업	중국경제성장	중국경제제도
물권법	○	○	○	시장경제
법인세법	△	○	○	시장경제
노동계약법	▲	▲	▲	노동시장 경직
반독점법	△(M&A규제)	△(M&A규제)	○	시장경제
파산법	○	○	○	시장경제

주○는 긍정적 영향, △는 다소 부정적 영향, ▲는 부정적 영향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진출 시 특혜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을 돌아보지 않고 특혜가 남아 있는 내륙지역 진출이나 기회주의적으로 업종 전환 등에만 몰두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중국의 기업정책 변화는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글로벌 시대의 공정경쟁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위협과 기회요인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냉정히 분석하여 중국사업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단층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중국 기업의 성장으로 경쟁자도 이전과 다르게 다수 출현함은 물론, 중국사업의 진출 지역, 업종, 방식 등 총체적으로 전략을 새롭게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미 발효된 각 법안들의 영향과 파급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지금 입법화가 진행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비하는 한편, 중국정부에 적극적으로 기업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11〉 기업정책 관련 법안에 대한 대응전략

법안	영향 및 대책
물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권에 대한 법률시스템 구축으로 경영리스크가 감소</li> <li>⇒ 정부관계 강화보다 등기권 확보, 분쟁에 대비한 법률팀 가동</li> </ul>
법인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율 상승, 수출기업 우대 축소 등으로 경영비용 상승</li> <li>⇒ 유예기간의 활용, 내륙지역 진출, 내수시장 공략, 첨단분야 진출 고려</li> </ul>
노동계약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부담 가중, 고용 유연성 감소, 노사관계 경색 우려</li> <li>⇒ 노사경색에 대비, 노사관리의 체계화, 현지화를 위한 핵심인력 양성</li> </ul>
반독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기업 M&amp;A규제 등으로 중국정부와의 갈등 가능성</li> <li>⇒ M&amp;A시 시장 지배적 지위 여부 고려. M&amp;A규제 준수</li> <li>• 국유기업 독점이 제한되는 금융, 보험, 통신 분야 위주로 진출 확대</li> </ul>
파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기업 구조조정은 기회요인, 합법 파산으로 사업리스크 감소</li> <li>⇒ 부실채권 시장 진출 모색, 현지 금융 이용 확대</li> </ul>

## 제 5 장 중국진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제1절 중국진출 기업의 문제점

현지법인의 성공/실패요인 및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 진출 성공요인으로는 본사의 기술 선도력(18.7%)을 가장 높이 꼽았고, 다음으로는 명확한 목표설정(17.4%)을 들었다. 판로확보(12.3%)나 투자 전 사전준비(10.3%), 진출 초기 생산시스템 안정화(11%)의 순으로 성공요인을 들었다.

중국 진출의 실패요인에 대한 질문에서는 진출목표 부재(2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내수시장 개척 미흡(15.5%), 중국기업의 기술 추격(14.8%)이 대표적인 실패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외에도 중국 진출 이전에 생각했던 진출목표를 진출 이후에 수정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진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거나, 이의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의 기술추격에 대한 대응 미흡은 과도한 기술력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고부가가치 기술로 적절한 시기에 이동하지 못한 결과로 나온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내수시장 개척 미흡은 점차 경제개발로 인해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내수시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상승(31.3%)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종업원들에 대한 각종 복지비용 부담 증가(23.8%), 노사분규(15.6%), 환경보호 규제 강화(10.2%)를 들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중국 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전 세계적 현상이므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종업원들에 대한 5대 보험 부담 증가와 같은 복지비용 부담 증가와 노사분규의 증가는 인건비 상승을 가져와서 중국 진출 한국중소기업들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1980년대 말 이후 한국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어 보았던 중소기업들로서는 노사분규 및 인건비 상승에 대하여 지금부터 한국에서의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저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비우호적 태도를 지적한 기업도 있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선별적 투자를 받으면서 국가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산업구조 조정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현지법인의 애로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건비 상승, 숙련공 및 전문 기술자 구인난, 원부자재 가격 상승, 과중한 사회보험 가입요구, 생산관련 인프라 부족과 같은 요인들이 주된 애로요인으로 대두되었다. 이중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과 같은 요인들은 인력 수급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중소기업 들로서는 2중의 어려움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생산직 인력의 집단 이탈, 통역 미흡으로 인한 정보획득의 부정확성, 중국 정부의 중국기업에 대한 불법적 차별 대우, 인사 및 노무관리의 어려움과 같은 요인들은 보통보다 조금 낮은 애로요인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2〉현지법인의 애로요인

요 인	평균
생산직 인력의 집단 이탈	3.28
통역 미흡으로 정보 획득의 부정확성	3.17
중국 정부의 중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우대	3.04
인사 및 노무관리 어려움	3.03
소급입법의 적용	3.01
투자유치후, 정부관의 태도변화	3
중국기업의 더핑판매	2.98
중국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2.97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한 정보획득 어려움	2.95
중국기업의 불법 복제	2.94
판매대금 회수지연 및 미회수	2.9
외자기업에 대한 법률적 차별	2.88
낮은 기업인지도로 정보원천 접근 어려움	2.87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과도한 정책 변화	2.78
시장관련 정보획득 어려움	2.73
증치세 환급지연 및 환급비율 변화	2.63
생산관련 인프라 부족	2.62
과중한 사회보험 가입 요구	2.61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조달 어려움	2.61
숙련공 및 전문기술인력 구인난	2.51
급격한 인건비 상승	2.39

주 : 애로요인은 1점이 매우 심각, 3점이 보통, 5점이 전혀 문제없음을 나타냄

중국 정부의 요구가 외국기업에 불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항에서는 대부분 중국 정부의 요구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지인 고용(3.04), 준조세요구(3.10), 중국 투자 유치단 활동에의 참여요구(3.37)과 같은 요인들은 보통 이상(점수기준: 1점 매우 심각 ~ 5점 문제없음)이기는 하지만 가장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지인 고용에 대한 요구가 심한 것은 저 원가 우위 달성 및 노사분규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지 인력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로서는 부담스러운 요구라고 할 수 있다.

현지법인의 성과로는 중국 투자 만족도에 대한 응답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3.12)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세부 문항에서 생산 비용 절감 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3.30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당기순이익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2.91로 나타나 중국 진출 이후 수익률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만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점이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발행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손익분기점 달성시기에 대해서는 72.5%가 3년 이내에 달성이 가능하였다고 응답하였고, 3년 이상 걸렸다는 집단도 27.5%나 되었다.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변화와 그 영향을 중심으로 한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팀(2006.12.27)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기업으로 중국에 진출한 업종을 살펴보면, 공예품 및 기타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가장 많은 비중(22.6%)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위해 진출한 기업이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업(13.6%), 섬유류(11.6%), 기계(9.6%), 무역업(9%), 전기전자(7.9%), 화학(5.6%), 신발·가죽·모피제조(4.5%)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응답업체 162개사 중 8년 이상(24.7%), 6~7년(17.3%), 4~5년(25.3%), 2~3년(28.4%)로 95.7%가 독자로 투자한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대상 180개 기업 중 162개가 중소기업으로 전체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응답 업체 127개의 92.9%가 독자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미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전체 180개 응답 업체의 26.4%를 차지하였으며, 응답 업체의 25.3%가 약간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1.1%는 대규모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2%가 1~2년 전에 비해 경영환경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했으며, 3.4%는 대폭 악화되었다고 평가해 중국의 각종제도 및 정책변화가 중국진출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진출기업의 경영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은 임금 및 복리비 부담 증가, 인력부족, 노조 설립, 노사분규 등 중국내 고용환경 변화(23.8%)로 조사되었고, 그 밖에 세금우대 축소와 세무조사 강화(14.8), 중국의 위안화 절상(10.8%), 환경규제 및 소비자 보호강화(10.8%),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을 인하(10.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기업이 저임 노동력을 이용하는 가공업 위주로 진출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노동조합의 설립요구 증대, 평균임금의 급상승, 고급기술 인력 및 단순 저임노동력 구인난 등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한편, 중국의 긴축조치로 인해 내수 판매가 위축(22.7%), 자금조달비용 증가(22.1%), 자금조달의 어려움(20.2%), 부지확보 어려움 및 지가상승(17.8%) 등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

긴축조치에 따라 2007년만 해도 벌써 두 차례의 대출금리 인상, 세 차례의 지급준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금융기관의 대출규제와 외화차입 규제, 토지개발 및 부동산 매입규제 등에 의해 기업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노동자 고용 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숙련 및 기술인력 부족(25.6%)과 임금 상승(24.5%), 현지인의 높은 이직률(17.3%)과 복지후생비용의 증가(9.8%)라고 응답하여 당초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에 첨단기술기업이 늘면서 고급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해 임금상승 및 구인난이 심각해진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에 북경·상해·광둥성을 비롯한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임금의 빠른 상승과 함께, 중국 정부의 농촌발전 전략으로 인한 도시로의 노동력 유입량 감소로 단순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데도 그 이유가 있다.

최근 2년 간 중국 진출 기업의 연평균임금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 173개사 중 64.2%가 5~20%(5~10% 인상기업 26.6%, 10~20% 인상기업 37.6%)의 임금을 인상해 중국 내의 평균 임금 인상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임금을 20%이상 인상한 기업도 전체 응답기업의 21.3%를 차지하고 있다.

세무관련 조치 중 비즈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강화(26.3%)와 세무행정의 투명성 부족(26.3%), 세제상 우대 축소(18%)와 과도한 준조세 부과(15%), 이전가격에 대한 심사강화(12.6%)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05년 12월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에서 납세신고 의무대상을 명시하고 원천징수 의무자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등 중국 정부가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면서 개인소득세 납세의무대상 외국인은 증가한 반면, 이에 대한 납세관리부실로 인해 탈루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세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 밖에 세무행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26.3%를 차지해 중국 세무행정의 공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강화에 따른 현지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응답 업체 141개 중 60.3%가 현지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 유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여, 우리나라의 진출업체가 중국 지방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사업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23.4%의 기업이 세무조사, 세제상의 우대 축소,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등의 세무 상의 불이익, 그리고 인프라 공급 면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바, 이는 그동안 실시되었던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 규제 회피, 과도한 공업단지 확대 등에 대해 중앙 정부가 지방에 대한 통제

를 강화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법인세의 지역별 격차를 축소하고 세율인하 등 직접적인 우대에서 공제 등 간접적인 우대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조치 등 가공무역 관련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기업이 전체 응답 업체의 52%를 차지하였는바, 이는 중국정부가 기술 이전 효과가 낮은 저부가가치 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위주의 투자로 전환해 산업 구조 고도화를 추구하려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첫째, 위안화 절상에 대한 대비책으로 총 166개 응답 업체 중 24.7%의 기업이 수출 비중을 축소하고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판매를 강화하는 등 위안화 절상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위안화 평가 절상으로 인한 중국현지 생산제품의 제 3국 수출 타격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위안화 환율하락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23.5%),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확대(10.8%), 한국으로의 수출확대(8.4%) 등의 대비책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위안화 절상에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기업도 28.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위안화 절상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세무관리 강화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중국 정부의 세무관리 강화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현지 세무당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해결(38.7%), 한국 직원의 임금을 현지에서 100% 지급(23.8%), 현지법인의 한국직원 축소(12.5%), 본사에서 중국 법인으로 수출하는 중간재 가격인하(9.5%), 중국 사업 축소(8.9%) 등을 대비책으로 꼽았다.

셋째, 쿼터대상 품목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는 응답 업체 130개 기업 중 32개(24.6%)가 쿼터 대상 품목에 종사하는 업체로 이 중 53.1%의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한 후 한국의 쿼터를 이용하여 수출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쿼터 대상지역으로의 수출을 포기하고 쿼터가 없는 지역으로 수출(31.3%)하거나 중국으로부터 쿼터를 배정 받아 수출(15.6%)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술이전과 R&D 투자 요구 강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조사대상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써 중국정부의 기술이전과 R&D투자 요구 강화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중국 내에 R&D센터 또는 연구개발 부서를 설립한 기업이 13.8%, 현지법인에 기술을 이전한 기업이 6.9%를 차지하고 있는 바, 향후 중국의 외국기업 공장 신·증설에 대한 기술이전 및 R&D 센터 설립 요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향후 중국 비즈니스 환경평가 및 계획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첫째, 중국 사업 환경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응답 업체 165개사 중 44%의 기업이 경영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35%의 기업이 향후 1~2년 후 중국의 전반적인 사업 환경이 악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예전에 비해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우려하는 기업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중국 내수판매 환경은 향후 1~2년 후 중국 내수 판매 환경에 대해서는 39.3%의 업체가 다소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41.3%의 업체가 금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해 중국 내수시장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수 진작 정책에 따른 소비시장의 성장이 예상됨과 동시에 중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수출환경 대해 26%의 기업이 낙관적으로 본 반면, 44%의 기업이 악화 될 것으로 평가하는 등 내년도 수출환경이 금년에 비해 좋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기업이 많았다.

이는 중국 내 임금, 지가 등 생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과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율의 인하에 따른 채산성 악화, 위안화 평가절상의 가속화에 따른 수출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향후 경영환경 악화요인에 대해서는 '노동비용의 상승'요인의 영향이 가장 영향이 클 것(26.2%)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밖에 중국 업체와의 경쟁 격화(17.8%), 중국의 법률적 제재 강화(11.7%), 환경 규제 강화(11.5%) 등도 향후 경



영환경 악화요인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조사 대상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진출이 많아 향후 고용환경의 변화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산 능력 및 기술력 향상에 따른 중국 업체의 추격 역시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다.

다섯째, 향후 사업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영환경이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중국에서의 사업을 점차 축소(11.8%)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5.3%)은 17.1%에 불과하고 오히려 사업을 확대(41.2%)하거나 현재의 규모를 유지(37.6%) 하겠다는 기업의 비중이 78.8%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이 생산기지로써 뿐 아니라 수요시장으로써도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26.4%가 적자 경영을 하고 있으며 33.6%가 최근 중국의 경영환경이 1~2년 전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78.8%가 중국 사업을 확대하거나 현재 규모를 유지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비록 중국의 각종 혜택 축소와 정책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 중국이 우리 기업에 있어서 대규모의 내수 시장과 투자처로서 매력적인 나라임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변화는 '산업구조 고도화', '자체 생산능력 향상', '지역 균형 발전',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 등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의 경제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새로운 정책기조로 자리 잡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이러한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여 리스크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고, 새로운 기회는 포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시사점에 발맞춰 중국 정부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R&D 센터와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저부가가치 가공무역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등 외국인 투자 및 무역정책의 변화를 시행하고 있는 바, 저임금 가공업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내수 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과의 합작 진출 또는 합작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중국 정부의 권역별 지역발전 계획에 맞춘 진출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외국기업들 중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중서부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어 이에 맞춘 전략적 진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는 중국의 정책 및 비즈니스 환경 변화로 우리 진출 업체들이 당면할 문제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발굴을 통해 예방과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의 관련정부기관이나 연구소와의 밀접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위급 관리 뿐 아니라 실무진들의 왕래 또는 교환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정부의 정책이 불시에 발표되어 업계의 불안과 혼동이 따르는 바, 상시로 중국의 정책을 체크하는 모니터링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 제2절 당면과제와 대응방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와 문제점은 진출시기, 기업의 규모, 진출 지역, 업종, 합자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그러한 당면 과제와 문제점을 성질에 따라 분류에 종합 정리해 볼 때 대체로 합자기업 운영, 노무관리, 토지 확보, 내수시장 접근의 4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중국 진출기업의 당면과제와 대응방안을 이상의 4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합자기업 운영

중국 투자 방식에는 크게 합자, 독자 등 세 가지가 있다. 합자는 중외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joint venture 개념이다. 즉 양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해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이다.

합작은 양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되 권리와 의무가 출자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배분되는 합자와는 달리 투자자들의 계약에 의해 배분되는 방식이다. 합작은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우리 기업에게는 다소 생소한 투자방식이어서 현재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합자 또는 독자로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외국인투자도입정책은 자국 기업의 보다 원활한 기술도입, 경영관리 도입을 위해 독자기업 진출보다는 합자 혹은 합작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초기 한국 기업의 중국투자는 합자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독자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향후 대 중국 기업진출에는 합자 혹은 합작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합자 혹은 합작(이하에서는 합자로 통일함)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대응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 **(1) 투자파트너 선정과 현지 실사**

대 중국 합자기업 활동시 적합한 파트너 물색과 선정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합자 목적에 부합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파트너를 찾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듯 하면서도 한국기업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첫걸음을 잘못 내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합자 파트너의 경영능력과 현황, 원자재 조달현황, 중국 측의 투자설비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2) 의견 대립과 문서화**

기업경영을 둘러싼 쌍방 간 의견 대립은 기존 합자 진출 기업이 애로점으로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며, 향후 진출 희망기업에 대해서도 심리적 부담이 되는 사항이다. 이러한 쌍방 간 의견대립은 復數의 중국 측 협력 파트너, 상호 업무 분장의 모호성 및 한국 측 본사의 원격조정 등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모두 상호 다른 관습 및 문화로 인한 이해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 1) 復數의 중국 측 사업 파트너

대 중국 합자 기업 운영에서 중국 측 기업이 국영기업인 경우 협력 파트너를 당해 기업이외에 현지 지방정부 등 복수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전선 업종의 경우, 한국 측은 특정 전선업체가 협력 파트너인 반면 중국 측 협력 파트너는 당해市 국경케이블 공장, 시 기계국, 시 인민정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시 기계국은 국영 케이블공장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시정부 상급기관이다. 시 인민정부는 당해市的 대외개방 외자유치 및 국영기업 정상화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지시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합자기업 운영에서도 이들 기관은 각기 다른 업무를 맡고 있다. 시 인민정부는 합자의 전체적인 방향을, 기계국은 합작계약과 분쟁협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케이블 공장은 협상 실무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복수의 협력 파트너로 인한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협력 파트너를 단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국영기업보다는 향진 기업 등 시장과 경쟁에 어느 정도 적응된 기업을 파트너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력 파트너로서 국영기업을 선택해야 할 경우에는 복수의 협력 파트너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경우, 1차적인 방안은 합자기업 관련 상층기관인 현지 당서기, 인민정부 및 지역사회와 양호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對中독자 혹은 합자 진출 기업 가운데 지역 당 및 행정기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기업은 한결같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현지 당서기, 인민정부 및 지역사회와 양호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반드시 총경리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들과의 관계 형성에 금전 공세는 절대 금물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금전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전 공세를 한 기업을 재차 방문하는 일도 없으며, 당해기업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도 방관자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2) 업무 분장의 모호성과 문서화

업무 분장의 모호성으로 인한 합작 쌍방간 의견대립은 총경리의 역할을 둘러싼 문제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총경리(사장으로서는 경영자)와 X(이사회회의 이사장)간의 갈등과 총경리와 부총경리간 갈등을 들 수 있다.

과견 한국인이 총경리를 맡고 중국 측이 동사장을 맡는 경우 총경리의 경영권과 동사장의 역할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sup>4)</sup>

중국 사람들은 법률이나 규정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때 중점을 두는 사항은 중앙에서 하달된 법률의 원칙에 충실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중앙에서 하달된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당해 지방에 유리하도록 집행하느냐'에 초점을 둔다.

합자기업 운영에 있어서 쌍방간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업무분장이 모호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분장의 모호성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약서 작성 당시 세세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문안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인들은 정해진 법과 규정에 대해서는 잘 따르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3) 과다 인력 고용 부담

사업 파트너로서 향진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업의 성격, 생산설비, 국내외 인지도, 중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해 국영기업을 협력 파트너로서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기존 합작 진출 기업들에 의하면 기존 인력의 80~90%는 과다인력이라고 한다. 중국 측과 합자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들 인력 가운데 상당수 고용은 불가피하다.

---

4) 산둥성 청도시 소재B유리공업의 사례이다.

합자기업 운영시 수반되는 과다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 방안은 협상력을 제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합자투자를 계획할 당시 파트너로서 복수의 후보를 선정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파트너 후보 기업 간 상호 경쟁을 유발하여 합자투자 계획기업이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파트너 기업으로서는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가 추천하거나 여타 기업이 추천한 기업을 후보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노무 관리의 효율화

한국 투자기업의 해외 현지기업에서의 노무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와는 문화와 경제 환경이 다르고 특히 우리와 전혀 체제가 다른 사회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수십 년 간 적응된 중국에서 노무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특히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는 그 동기가 대부분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의 활용에 있으므로 노무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요소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 (1) 직원간 갈등과 관리의 현지화

파견 기술자들은 중국의 문화 및 관습에 익숙하지 못한다다가 관리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한족 근로자와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족 근로자들은 파견 한국인이 자기들을 지나치게 깔본다거나 균립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다.

파견 한국인들은 한족들에 대하여 “어떠한 일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애사심이 없고 이기적이다”, “이해타산에 밝다”는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한족들은 파견 한국인에 대하여 “지나치게 인색하다”,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긴다”, “관리가 엄하고 가부장적이다”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호간 불신은 중국 문화에 관습에 대한 무지, 단기간 내 이익 발생을 추구하는 경영태도, 파견 한국인의 불편한 근무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양자간 마찰을 회피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현지인에 대한 관리를 현지인에게 맡기는 방법 즉, 관리의 현지화를 들 수 있다.

## (2) 토지 사용권의 취득<sup>5)</sup>

### 1) 현지법인의 직접 취득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에 직접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첫째 설립 전에 모기업이 계약금을 지불 또는 매입을 확약한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경우, 둘째 설립 전에 모기업이 구입한 토지 사용권의 재 양도를 받은 경우, 셋째 공개입찰에서 토지사용권을 낙찰 받는 경우 등 세 가지이다.

대 중국 투자 초기에는 첫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외 개방 초기에는 외국기업들이 대개 분양가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도시 근교에 위치한 개발구에 진출했기 때문에 토지사용권의 원소유자와 협의도 필요 없었고 진출기업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외자의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좋은 조건의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해마다 어려워지고 지가(사용권 가격)도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둘째의 방법이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의 경우는 주로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종 채택되고 있는 방법이다.

외국기업은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초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 계약의 매입 당사자는 첫째의 경우라면 외국인 투자업체 자신이고 둘째의 경우라면 모기업이지만 매각 당사자는 각급 지방정부의 토지관리 부분이다.

여기에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결국 각급 해당 토지의 현 사용자 또는 사용권자가 토지 사용권을 매각하는 계약금을 현 사용권자를 자칭하는 중국 기업에 횡령당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한 경우는 재양도에 속하며, 현사용자와

---

5) 기업 활동용 토지를 확보하는 데는 사용권 취득이외에 '임차'방식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용권 취득'이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계약체결 이전에 지방정부의 토지 관련 부문에 사전에 확인한 다음 지방정부의 토지관리 부문과 직접계약을 체결하거나 적어도 재양도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2) 중국측 파트너의 현물 출자

현지법인이 토지를 확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합자의 경우에 중국 측 파트너가 토지 사용권을 현물 출자하던가, 합작의 경우에는 합작조건의 하나로서 마찬가지로 토지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 측이 토지 사용권을 합자기업 또는 합작기업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 관련 조례에 기초하여 불하금을 정부에 납입하고 양도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 조례가 공포되기까지는 현물출자의 경우 중국 측 파트너가 무상으로 정부로부터 사용을 인가 받은 토지를 유상으로 합자 혹은 합작기업에 제공 출자하는 형태가 많았다.

최근에는 향진(鄉鎮)기업과 촌판(村辦)기업 등 농촌 지역의 기업이 합자·합작의 파트너로서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이러한 국유화 조치를 전부 생략하고 있거나 혹은 외자측이 집단소유지의 소유권이 현물출자된 것으로 오해하여 적법한 사용권 양도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발각되면 당연히 모두 몰수될 위험성이 있다.

토지 사용료의 납부도 주의를 요하는 문제이다. 합자·합작에서 현물 출자한 후에 매년 지불해야 하는 토지 사용료가 발생하면 그것은 법률상 중국 측 파트너 또는 현지법인 어느 쪽이 지불해도 좋게 되어 있다.

## 3) 토지사용권의 가격 결정

중국의 부동산 사용권 가격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유통시장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오히려 정부의 토지 관리 부문이 크게 관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가격은 외자기업 스스로가 개발구의 토지 사용권을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합자·합작기업에 있어서 중국 측 파트너가 현물 출자하는 경



우 결정 방법이 미묘하게 다르다. 공단을 직접 조성하는 경우 거주자의 퇴거, 보상금, 조성비용, 기타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비용 등의 개발비와 토지 사용료의 합계로 산출되는 것이 원칙이다. 후자의 경우 중국 측 파트너가 지방정부에 지불한 양도료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주변 토지 사용권의 거래 사례와 그 토지의 수익성을 감안하여 지방정부의 토지관리 부문이 결정한다.

따라서 전자 쪽이 가격 정보를 파악하기 쉽고, 또한 같은 개발구내에 선발 현지법인이 있는 경우 그곳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안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투자부의 영향으로 토지 사용권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고, 불과 며칠 만에 폭등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수출형 기업과 선진 기술형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토지사용권 가격을 낮추어 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출 시점과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반드시 다른 기업과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동일한 장소의 토지사용권에 대해서도 그곳에서 전개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권의 가격이 다른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지방정부가 종합적인 경제 발전 계획 중에서 업종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는 외자기업은 우선 지방정부 또는 중앙의 직접 관련 부문이 환영하고 있는가, 또 그 환영의 정도는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가를 직접적으로 투자 채산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외자 기업이 독자적으로 공장을 조성 개발하면 퇴거주민,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부문, 인근 주민 등이 법외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런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방정부로서는 민생안정과 인프라스트럭처 건설도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외자 측을 편들어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한편, 중국 측 파트너나 현물 출자하는 경우는 국내기업과 지방정부가 토지수용등을 추진하므로 현지법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보다도 낮은 비용으로 잘 처리 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측 파트너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 예를 들면, 공장부지의 일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 평가 계산을 외자측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고정자산의 평가방법은 최근 크게 개선되어 선진국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오히려 유통시장의 미발달로 인해 거래사례의 선정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인 것 같다.

#### 4) 토지 확보 유의점

첫째, 복잡한 토지 법제를 잘 파악해야 한다.

둘째, 토지에 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이것은 지방 정부가 종합적인 경제발전 계획 중에서 업종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업종 중에서도 수출비율이 높은 제품 수출기업과 도입된 기술이 선진기술이면 토지 사용료는 더욱 낮아진다.

셋째, 토지의 용도변경에 유의해야 한다.

넷째, 토지사용권 매입시 사전에 지방정부의 토지관련 부문에 확인해야 한다. 현지법인의 토지사용권 취득 방법에는 모기업이 사전에 확보하거나 투자법인이 직접 취득하는 방법, 그리고 공개입찰에서 낙찰 받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모기업이 확보하여 투자기업에게 재양도하는 방식인데, 여기에서 주위를 요하는 것은 결국 해당 토지의 현사용자 또는 사용권자가 토지사용권을 매각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일부의 현지법인이 이점을 오해하여 계약금을 현 사용권자를 자칭하는 중국기업에 횡령당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다섯째, 중국 측 파트너의 현물 출자시 토지의 가치평가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 측 파트너가 현물 출자하는 경우는, 국내기업과 지방정부가 토지수용 등을 추진하므로 현지법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보다도 낮은 비용으로 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낮은 비용으로 입수 가능한 토지인 데도 중국측의 파트너가 자신의 持分을 높이기 위하여 높은 단가를 매길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여섯째, 중국 측 파트너의 적법 절차 순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농촌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단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국가가 접수하여 국유지화한 다음 불하받던가 또는 소유권을 가진 기업이나 기관과의 합자·합작을 통해 중국 측 파트너로부터 현물출자로 제공받아야 한다. 이러한 국유화 조치를 전부 생략하거나

외자측이 집단소유지의 소유권이 현물 출자된 것으로 오해하여 적법한 사용권 양도 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 경우 토지를 몰수당할 위험도 있다.

일곱째, 공단을 직접 조성하는 경우, 토지사용권 가격 결정 매커니즘과 인프라스트럭처 구비에 유의해야 한다. 토지비용에는 거주자의 퇴거, 보상금, 조성비용, 기타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비용 등의 개발비와 토지사용료의 합계로 산출되는 것이 원칙이다.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도시지역에 걸린 퇴거문제이다.

여덟째, 토지사용권 양도계약 체결 시에는 토지사용권 비용에 인프라스트럭처에 관한 비용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중앙정부도 인프라스트럭처 정비 문제를 중시하고 있고, 외자 프로젝트 심사 시에는 물론 심사인가 기관 측으로부터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의 공급확약을 문서의 행태로 타당성 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사업주체에 대해 요구해 오고 있다.

### 3. 중국 내수 시장 진출

1990년대 초까지는 중국의 대외개방 초점이 대외무역 부문에서 수출의 증대, 외국인 투자 부문에서는 부족한 국내자금 및 기술의 보완에 맞추어졌으며 대외개방 지역도 연안중심의 제한적인 것이었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은 내륙 지역으로 확산되는 전방위 대외개방의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내수 시장 개방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었다.

중국이 내륙·변경 지역에 대한 개발을 강조하면서 전방위 대외개방 전략을 취하고 내수시장 개방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도 종래의 발해만 지역 및 동북3성에 집중된 수출가공형 투자 중심에서 벗어나 내륙·변경 지역을 포함한 보다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 지향적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관련된 주요 현안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1) 중국의 유통 관련 정책 이해

중국의 유통시장은 개혁·개방 이후 국가의 독점구조가 해제되고 기업의 자율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양식이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1992년 소매 유통업 개방을 계기로 이루어진 외국자본의 유입은 중국에 새로운 형태의 선진 유통체제를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유통시장은 여전히 각종 제도적 장벽이 산재해 있으며 유통관련 인프라도 크게 낙후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유통시장 진출이 내수시장 확대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유통시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유통과 관련된 정책을 변화 추이, 구조, 외국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그리고 유통업 진출 성공 사례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유통 분야에서의 한국기업 대 중국 진출은 일천하기 때문에 기존 기업으로부터의 체험을 통한 정보구입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문헌 조사를 통해 숙지해야 할 것이다.

## (2) 현지 밀착형 시장 조사

시장 조사는 내수목적 진출 기업이 반드시 거치는 기본적인 수순이다. 대 중국 진출기업들도 대부분 시장조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 작업을 거쳤다고 한다. 이하에서는 중국의 특수성을 잘못 이해하여 초창기에 고전한 기업을 소개하기로 한다.

천진에 소재하고 있는 D 보일러 회사의 경우, 국토가 광활한 중국, 특히 추운 날씨가 많은 동북부 지방에서는 난방장치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중국에 진출하였다. 생산거점으로는 동북부 지방과 비교적 가까우며 북경과 인접한 천진을 선택하였다. 이 회사는 중국내 대부분의 연료가 석탄인 점을 감안하여 보일러 연료장치를 경유용에서 석탄용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마무리하였으며 생산시설

이 완공되면서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10여개의 대리점을 개설했다.

그러나 동북부 지역에서의 보일러에 대한 수요는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오히려 상해 지역을 비롯하여 장강 유역 또는 장강이남 지역에서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동북부 지역에서의 난방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으며, 보일러에 대한 특별한 매력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시설교체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반면 장강 주변 지역은 겨울이 짧고 한겨울에도 영상 3~4° C 정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난방장치 없이 지내곤 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의 겨울은 오히려 동북부 지역에 비해 출게 느껴질 수도 있다. 즉 이들 지역에서 간단한 보일러 시설만으로도 길진 않지만 겨울을 비교적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에서 시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품 및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 (3) 적극적인 광고·홍보 전략

중국에서의 광고 매체는 한국에서처럼 다양하지는 않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광고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광고의 중요성을 동종의 S 및 N 식품회사의 예로서 알아보기로 한다.

S회사는 1989년 중국에 진출한 기업으로서 산둥성 청도시에 소재하고 있다. 동회사의 광고전략은 주로 영업부의 세일즈맨을 활용하는 것에 의존해 왔다. 또한 동회사는 진출 초기부터 청도시 지역에 입간판과 거리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 이외에도 별다른 광고를 하지 않았다. 즉 동회사는 초기부터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광고보다는 인근 시장부터 차근차근 점령하려는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이에 비해 상해 소재 N회사는 S 회사보다 6년 늦은 1995년에 진출하였다. 동회사는 상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광고 매체를 통한 마케팅 전략을 실시하였다. 즉 S 회사와는 차별화된 광고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그 결과 N회사 제품은 짧은 진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판

매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 먼저 진출한 S 회사의 제품은 산동성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비해 후발 주자인 N회사의 제품은 중국 전역에 걸쳐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S 회사가 중국 국영업체를 합자 파트너로 선정한 반면 N회사는 대만기업을 합자 파트너로 선정한 것에도 기인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광고 방법과 이에 의한 효과의 차이라 할 수 있다.

#### (4) 고급화 중시 정책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의 기본적인 관심사항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면 중국에서 합리적인가?'하는 문제이다. 즉 중국인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평균 소득수준은 2002년 기준 연간 약 8,000元 정도이며, 연해 지역의 경우 이보다 다소 높아 1만元 정도이다. 이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120만~150만원 정도로 극히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중국 내에서의 가격경쟁은 초저가정책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소비행태는 기업인들의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 특히 광둥성 광주 지역의 소비자 구매력은 매우 높다. 실제로 KOTRA의 현지조사에 따르면 이곳에서의 소비수준은 오히려 서울을 능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고가 의류 및 고급TV 등에 대해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상해의 경우 부자들은 호주 또는 일본으로 쇼핑 원정을 다니며 중산층은 상해 시내 유명 백화점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중국의 통계나 정책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다. 중국정부가 표면적으로는 내구성 소비재에 대한 수입금지 및 수입억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이윤이 있으면 현지시장에서 당당하게 물건이 팔리고 있다.

중국인들의 소득원에 대해서는 진출기업 마다 의견이 상의하나 바람직한 가격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즉 중국시장에서는 고급제품, 고가정책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 (5) 국영기업 활용

내수를 목적으로 하는 대 중국 진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금회수의 어려움이다. 중국의 경우 충분한 재력을 가진 개인 사업자가 그다지 많지 않고, 충분한 재력가가 있다 하더라도 거래관계 구축에 필요한 신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특히 중국에서는 부동산이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점에 물건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담보할 물건 확보가 어렵다. 한국의 유통회사가 많이 진출해 있으면 대금회수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내 유통시장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한국 유통회사의 대 중국 진출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유통망 형성에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 산동성 청도시 소재 Y레저용품 회사가 내수판매를 위한 대리점을 구축할 때 채택한 방식은 일종의 조합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동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공급할 때 이 조합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앞서 공급한 물건의 판매 대금을 가지고 올 경우 회수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물건을 재공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C전자 회사는 국영기업을 대리점으로 활용한 예이다. 이 회사는 내수 판매 대리점으로 중국 내 동종의 국영기업을 선정하였다. 동 회사는 이러한 국영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비해 질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경쟁관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영기업을 대리점으로 선정하는데는 국영기업이 개인업자에 비해 신용관련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과 특히 동종 국영기업이 주요 수요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 4. 리스크 관리 강화

한반도 면적의 43배, 13억이 넘는 소비인구,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 매년 10%이상 급성장하는 국가, 낮은 생산원가 등등. 전세계 국가들이 중국 시장을 일찌감치 주목한 이유이다. 우리나라도 1992년도에 양국간 수교를 체결한 이후 교역 규모가 2006년 기준으로 1,761억 달러를 넘어섰다. 멀지 않은 미래에 중국이 경

제적 측면에서 세계적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중국 시장에 대한 기회 요인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근의 중국 사업 환경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위기의식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무역협회가 지난 2006년 12월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 180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6.4%는 적자경영을 하고 있고, 33.6%의 기업들은 중국 사업 환경이 1~2년 전에 비해 크게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중국 사업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위협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리스크 요인을 평가해 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에 대한 외국기업의 직접 투자 현황은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건수가 2005년까지 44,00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6년에 5.8%가 감소한 41,47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투자 승인 건수가 줄어드는 데는 중국 정부가 하이테크 기술과 고부가가치 사업을 제외하고는 투자 허용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 열기가 식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무분별한 외자 유치를 제한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 조항을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대 중국 투자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금액기준으로 38.9억 달러의 투자를 집행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24.6%로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대 중국 외국인 투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홍콩, 아일랜드, 일본에 이어 4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대 중국 투자비중이 높은 만큼 중국 사업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표 13> 중국의 외국인투자 추이

	2002	2003	2004	2005	2006
계약건수	34,141	41,081	43,664	44,001	41,473
(증가율,%)	30.7	-20.2	-6.3	-0.8	(-5.8)
계약액	838	1,151	1,535	-	-
(증가율,%)	(17)	(39)	(33)		
실행액	527	535	606	603	630
(증가율,%)	(12.5)	(1.4)	(13.3)	(-0.5)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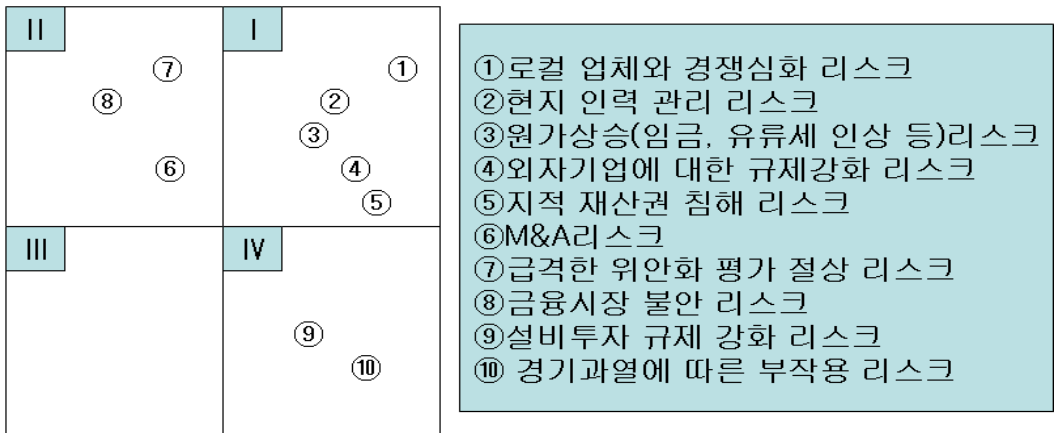
중국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중국 사업이 직면할 10가지 리스크는 발생 가능성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관리의 우선순위와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

<표 14> 중국 사업의 리스크과 그 영향

중국 사업이 직면할 리스크 요소	리스크의 영향
① 로컬 업체와 경쟁심화 리스크	중저가 시장의 상실
② 현지 인력 관리 리스크	생산차질 및 품질 악화, 기술 유출
③ 원가상승(임금, 유류세 인상 등)리스크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④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리스크	세금증가, 혜택 축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
⑤ 지적 재산권 침해 리스크	기업의 경쟁력 저하, 브랜드 가치 상실
⑥ M&A리스크	경영권 상실에 따른 사업 운영 중단
⑦ 급격한 위안화 평가 절상 리스크	수출 경쟁력 저하
⑧ 금융시장 불안 리스크	자금 조달 차질 및 금융비용 상승
⑨ 설비투자 규제 강화 리스크	증설계획 등 당초 투자 계획 목표 수정
⑩ 경기과열에 따른 부작용 리스크	기업 경영환경의 악화

중국 사업에서 제기되고 있는 리스크를 발생가능성과 영향도 측면에서 4상한으로 구분, 평가한 결과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그림 2> 리스크 평가



자료 : LG경제연구원 자체 리스크 평가

먼저 I상한은 발생가능성이 높고 영향도가 큰 리스크로 가장 시급히 대응해야 할 리스크들이다. 로컬업체와의 경쟁심화, 현지 인력관리, 원가 상승,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리스크가 이에 속한다. II상한은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영향도가 큰 리스크 유형으로 시나리오 대응이 필요한 리스크이다. 급격한 위안화 평가 절상, M&A증가, 금융시장 불안 등의 리스크가 이에 해당된다. III상한은 발생 가능성이 낮고 영향도도 낮은 부분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낮은 영역이다. IV상한은 영향도는 낮지만 발생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로 평상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관리 영역이다. 경기 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리스크, 설비투자 규제 강화 리스크가 이에 해당된다.

중국 사업전개에 있어서 시급히 관리되어야 할 리스크는 발생 가능성도 높고 영향도가 큰 I상한에 위치하고 있는 ①~⑤까지의 리스크들이다. 이에 대해 각 항목 별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로컬 업체와의 경쟁심화

우리나라와 중국 간 기술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원가로 경쟁력을 지닌 중국 업체들이 내수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비용 구조인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들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이미 원가 경쟁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우리나라와 일본기업들이 중저가 시장에서 중국업체와의 정면 승부는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과반수 이상은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 업체와의 경쟁심화가 첫 번째 리스크가 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업체의 기술 수준은 첨단하이테크 산업을 제외하고는 매우 근접해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우리 기업들이 싸워야 할 상대가 일본 뿐 아니라 중국 로컬 기업들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출품 중 전기전자와 섬

유, 화학 등을 중심으로 중복되는 품목의 수가 1995년 21개, 2000년 22개, 2005년 29개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품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의 강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전기 전자 업종이 2005년 기준 29개 중 18개로 가장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더욱이 10대 수출품에서는 컴퓨터 부품, TV부품, 디지털 반도체, 컴퓨터 입출력 장치, 휴대폰 등 5개 품목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날로 중국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중국 내수시장은 물론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과의 경합에 따른 시장 잠식위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원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의 물량공세를 이길 수 있는 차별화 전략 설정이 시급하다. 차별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의 전환과 중국 내수시장을 대체할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지역 선정 등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현지 인력관리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지만, 쓸만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워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간에 인력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업의 성공요인은 리더십 역량의 확보, 핵심 인재의 확보와 유지 등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중국 현지 법인들의 고충은 현지 인력의 잦은 이직이다. 특히, 25~35세의 2~5년 경력자들의 이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경력사원으로 한참 기여해야 할 인력들의 대거 이탈은 중국 사업의 주요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인력 이탈로 인해 생산 차질, 불량률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기회비용은 기업의 원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 사업에서 현지 인력 관리 리스크는 노조설립 등이 확산될 경우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선진 기업들은 현지 인력 관리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국내기업들도 중국 현지화 차원에서 장기적인 인재 확보와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국의 제한된 인재 풀에서 어떻게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해 나가느냐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3) 원가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오늘날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까지 이끌었던 주된 요인은 당연히 낮은 생산 원가이다. 물론 중국보다 생산 원가 측면에서 더 경쟁력을 지닌 유리한 조건을 지닌 국가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사업에 필요한 지리적 조건, 인프라, 원재료 등이 풍부하고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인건비 상승, 물류비 상승, 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코스트 증가 등이 원가상승요인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의 인건비는 최근 매년 10%이상씩 상승하고 있다. 특히 현지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출되는 복리 후생비 등을 동시에 고려해 본다면 인상률은 10%가 훌쩍 넘는 수준이다. 실제로 2005년에도 노동자 평균 임금이 14%가 상승하였고, 주요 도시의 최저임금 인상은 중국 사업의 수익성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요소이다.

중국 사업에 있어서 생산분야에서 직면하게 될 중요한 리스크 중 하나가 중국 생산 제품의 품질 확보 문제이다.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시되는 제품은 브랜드와 명성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의 수입품 가운데 리콜의 60%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매년 인상되는 전력, 수도, 가스요금도 중국 사업의 수익성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기업들과 경쟁해야 할 우리 기업들은 원가 상승 요인들을 명확히 파악하여 개선해 나감은 물론 원가 절감을 위한 혁신적 노력 이외에 저렴한 물류거점의 확보, 철저한 품질관리 등을 하나의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4) 외자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2006년 중국 상무부는 「제 11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내·외자기업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선언했다. 각종 분야에서 외자기업에게 제공된 특혜가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향후 세무, 환경, 노무관리 분야 등에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것은 자명하다.

외자 유치 관점에서 자국 기업보다 낮게 부과해 왔던 소득세율을 자국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개정 기업소득세법」이 2007년 3월 16일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하지만,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는 현재의 15% 소득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중국 로컬 기업과 외자 기업 중 첨단 기술 사업이 아닌 일반 제조업체는 세율을 25%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국의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쟁력이 없는 분야는 향후에도 투자 유인책을 그대로 유지시켜 경쟁이 가능할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속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 협약 체결 의무화, 퇴직금제 시행 등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을 뿐 아니라 철강, 시멘트 등 중복 투자가 많고 환경오염이 심한 업종에 대해서는 진입제한 및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 (5) 지적 재산권 침해

지적 재산권 침해가 중국 사업의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 육성을 내세워 외자 기업의 지적 재산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사업의 리스크를 평가한 조사에서 중국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 침해 이슈는 2006년에 3위, 2005년에 1위, 2004년에 2위로 평가되고 있다. 2003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미국, 유럽, 일본 기업들은 지적 재산권 침해로 연간 600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었는데, 나아가 기업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

상실까지 포함한다면 그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중국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 침해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에 대한 관리 절차 및 관리 정책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특히 직원에 의한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중국 기업과 경쟁심화, 원가 부담 증가 등 중국 사업에 있어 직면하게 될 리스크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질 전망이다. 특히 중국 사업 관련 리스크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심각성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중국정부의 정책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리스크를 조기에 인식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사업에 직면하게 될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중국 사업 현장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사업의 성패는 리스크 관리 여하에 달려 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국 사업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 제 6 장 결 론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중국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최근 전인대를 통과한 물권법과 법인세법 등 기업정책의 변화에 발맞추어 어떤 대 중국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권법 제정으로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는 중요한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즉, 소유권, 담보권 등이 비교적 명확해지면서 물권법 미비로 인한 각종 분쟁과 혼란 그리고 경영에 있어서 비효율성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지만,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 명시 등으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투자가 어려워지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되는 효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법인세법은 세율단일화와 업종별 우대가 핵심사항으로, 그 동안 외국인투자기업과 중국 기업으로 이원화된 법인세율을 25%로 단일화하였다. 다만, 新법인세 법안 공포 이전에 설립된 기업에게는 5년 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고, 서부내륙 지역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의 법인세율은 15%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하였다.

셋째, 노동계약법이 시행될 경우 퇴직금 지급, 종신계약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고용 경직성 등으로 기업 측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근로자의 권리의식 향상은 물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권 보장, 해고시 노동조합과의 합의 조항 신설 등 노조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어 노사간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결국 노동계약법은 외국인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넷째, 반독점법은 특히 금융, 보험, 통신 등에 대한 행정 독점 문제가 해결될 경우, 외국기업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의 시장 독과점 제한, 카르텔 금지, 적대적 M&A 제한 등은 외국 기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중국 정부는 1994년부터 국유기업 파산 시에 시장논리에 어긋나게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파산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사업자 및 개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기업으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진출 시 특혜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을 돌아보지 않고 특혜가 남아 있는 내륙지역 진출이나 기회주의적으로 업종 전환 등에만 몰두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위협과 기회요인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냉정히 분석하여 중국사업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단층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중국 기업의 성장으로 경쟁자도 이전과 다르게 다수 출현함은 물론, 중국사업의 진출 지역, 업종, 방식 등 총체적으로 전략을 새롭게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이미 발효된 각 법안들의 영향과 파급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지금 입법화가 진행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비하는 한편, 중국정부에 적극적으로 기업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중국 경제환경의 변화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국 기업과 경쟁심화, 원가 부담 증가 등 중국 사업에 있어 직면하게 될 리스크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질 전망이다. 특히 중국 사업 관련 리스크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심각성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중국정부의 정책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리스크를 조기에 인식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사업에 직면하게 될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중국 사업 현장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사업의 성패는 리스크 관리 여하에 달려 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국 사업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홍석, 이영주, 2003, 중국투자 중소기업의 현지적응비용과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 방호열, 1999, 중소기업 국제화의 전략적 특징과 성과, 무역학회지 제 24권 제3호, pp.115-144.
- 백권호, 김윤태, 소동훈, 악종석, 정종규, 주영하, 2002,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지화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양평섭, 2004,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전략 변화와 사례분석, 무역연구소
- 이홍식, 김혁황, 2004,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 결정요인분석, 대외경제연구 제8권 제2호, pp.257-289.
- 지만수, 2002, 한국기업의 대 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지만수, 남영숙, 조현준, 이홍식, 김은란, 200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승민, 김용민, 2006, 중국진출 우리기업 긴급 실태조사 -중국의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그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 한병섭, 김익수, 2004, 중국투자기업의 철수 결정요인 분석, 국제경영연구 제15권 제1호, pp.107-143
- 한정화 외 5명, 2005, 한국중소기업 중국진출 성공과 실패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 기은경제연구소

### 〈웹사이트〉

[www.nso.go.kr](http://www.nso.go.kr) 통계청

[www.koreaexim.go.kr](http://www.koreaexim.go.kr) 한국수출입은행

[www.kita.net](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경영학과	학 번	20059002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 고대곤    한문 : 高台坤    영문 : Ko, Tae-Gon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롯데아파트 107-1301				
연 락 처	011-608-4060				
논문 제목	한글 :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방안에 관한 연구 영문 : A Study on the Advance of Korean Enterprises to China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년      월      일

저작자 : 고 태 곤 (서명 또는 인)

###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